

※ 바로 잡습니다.

※ 2024년 세액공제·감면 바이블 (저자 : 김선명·김준성·민규태) 교재 정정사항 안내

번호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1	p.174 첫번째 표 "2022 ①전체 급여"	192,000 4	223,000 5
2	p.174 두번째 표 "22" "근로자 / 임금"	A 45,000 B 44,000 C 40,000 합계 192,000	A 60,000 B 50,000 C 50,000 합계 223,000
3	p.175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㉑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 36	4 48
4	p.175 "2. 평균임금 계산" "㉒ 직전 과세연도 평균 임금"	54,000,000 162,000,000 3	48,250,000 193,000,000 4
5	p.175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 "㉓ 직전 과세연도 평균 임금"	64,500,000 129,000,000 2	53,333,000 160,000,000 3
6	p.175 "4. 평균임금 증가율" "㉔ 해당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 "㉕ 직전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	0.2500 0.3821	0.3989 0.1428
7	p.175 "5.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6.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0.1675 21,135,000	0.0878 14,054,600
8	p.175 "㉖ 중소기업 계산특례" "㉗ 세액공제액"	816,000 163,200	24,824,000 4,964,800
9	p.176 첫번째 표 "2022 ①전체 급여"	192,000 4	192,000 5
10	p.178 "3. 각 과세연도별 입사자 제외시 평균임금 계산" "㉘ 직전 과세연도 평균 임금"	45,583,000 129,000,000 2.83	43,000,000 129,000,000 3
11	p.178 "4. 평균임금 증가율" "㉙ 직전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	-0.0232	-0.0785

p.174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 계산 사례

[사례2] 입사자 및 퇴사자 포함_1년 미만 근로자 없음_중소기업특례 적용

구분	연도	세액공제대상 근로자					
		①전체 급여		주1)②각연도별 신규입사자		주2)③퇴사자	
		급여	인원수	급여	인원수	급여	인원수
당기	2023	280,000	5	10,000	1	0	
직전 1년	2022	223,000	5	33,000	1	30,000	1
직전 2년	2021	180,000	4			40,000	1
직전 3년	2020	164,000	4			38,000	1
직전 4년	2019	160,000	4			35,200	1

주1) 각연도별 신규입사자는 서식 "3"에서 제외함.

주2) 2022년도 퇴사자는 그 이전 검토대상 전체기간(2019~2022)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함.(법26-4
⑩) 서식 "1"과 "2"에서 제외함.

23		22		21		20		19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급여	근로자	급여	근로자	급여
A	80,000	A	60,000	A	50,000	A	45,000	A	45,000
B	75,000	B	50,000	B	45,000	B	40,000	B	40,000
C	75,000	C	50,000	C	45,000	C	41,000	C	39,800
		D(10월 퇴사)	30,000	D	40,000	D	38,000	D	35,200
E	40,000	E(1월 입사)	33,000						
F(1월 입사)	10,000								
합계	280,000		223,000		180,000		164,000		160,000

※ 퇴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와 상관없이 평균임금 계산시 받은 총임금을 제외하기 때문에 환산하지 않는다. 반면 입사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계산시 받은 임금을 연환산하여 계산한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1월 입사를 한 경우이므로 연환산 하지 않는다.

[사례3] 입사자 및 퇴사자 포함_1년미만근로자 있음_직전연도 평균임금증가율 음수인 경우 특례

구분	연도	세액공제대상 근로자					
		① 전체 급여		주1) ② 각연도별 신규입사자		주2) ③ 퇴사자	
		급여	인원수	급여	인원수	급여	인원수
당기	2023	280,000	5	10,000	1	0	
직전 1년	2022	192,000	5	33,000	1	30,000	1
직전 2년	2021	180,000	4			40,000	1
직전 3년	2020	164,000	4			38,000	1
직전 4년	2019	160,000	4			35,200	1

주1) 각연도별 신규입사자는 서식 "3"에서 제외함.

주2) 2022년도 퇴사자는 그 이전 검토대상 전체기간(2019~2022)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함.(법26-4 ㉞) 서식 "1"과 "2"에서 제외함.

23		22		21		20		19	
근로자	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	급여	근로자	급여	근로자	급여
A	80,000	A	45,000	A	50,000	A	45,000	A	45,000
B	75,000	B	44,000	B	45,000	B	40,000	B	40,000
C	75,000	C	40,000	C	45,000	C	41,000	C	39,800
		D(10월 퇴사)	30,000	D	40,000	D	38,000	D	35,200
E	40,000	E(3월 입사)	33,000						
F(1월 입사)	10,000								
합계	280,000		192,000		180,000		164,000		160,000

※ 근로자 E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시에 임금을 연환산하여 계산하는 반면, 근로자 F의 경우 1월 입사이므로 평균임금 계산시 연환산하지 않는다.

<참고>

1.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 또는 임금으로 본다.

2. 세무사랑 등 프로그램 사용시 주의할 점

- 급여 미지급시 프로그램상 상시근로자 수에서 빠지는 지 여부 확인
- 출산휴가자의 경우 급여미지급이라도 상시근로자수 포함
- 육아휴직자의 경우 4대보험 미납부이면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 1년 미만자의 임금 환산이 되었는지 확인 필요

